

울 산 지 방 법 원

제 0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06카합 702 공사금지가처분

신 청 인 별지 1 기재와 같다.

신청대리인 변호사 0 0 0

피 신 청 인 1. 0 0 건설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잠원동 00-2

대표이사 0 0 0

2. 0 0 ○○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울산 ○○ ○○동 000-10

대표자 조합장 0 0 0

신청대리인 변호사 0 0 0

주 문

1. 신청인 0 0 0 , 0 0 0 , 0 0 0 , 0 0 0 을 제외한 신청인들이 피신청인들을 위하여 담보로, 20억 원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다만, 위 금액 중 1억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공탁하여야 한다), 피신청인들은 울산 ○○ ○○동 000-6외 6필지 106,784㎡ 지상 건축예정인 0 0 ○

○ 1단지재건축아파트(0 0 캐슬 골드) 중 별지 2 도면 표시 110동 a라인은 지상 6층을, b라인은 지상 9층을, 112동 c라인은 지상 6층을, d라인은 지상 9층을, 114동 e라인은 지상 6층을, f라인은 지상 9층을, 109동은 지상 13층을, 111동은 지상 13층을, 115동은 지상 13층을, 108동은 지상 19층을, 105동은 지상 19층을, 103동은 지상 19층을, 101동 g, h, i라인은 각 지상 19층을 초과하는 일체의 신축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신청인들이 위임하는 집행관은 제1항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신청인 0 0 0 , 0 0 0 , 0 0 0 , 0 0 0 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4. 신청비용 중 신청인 0 0 0 , 0 0 0 , 0 0 0 , 0 0 0 과 피신청인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신청인들이, 나머지 신청인들과 피신청인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신청인들이 각각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신청인들이 피신청인들을 위하여 담보로 20억 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외에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소명된다.

가. 신청인들은 울산 ○○ ○○동 000-13 지상에 건축된 0 0 ○○아파트 101동 및

102동 아파트 및 상가동(이하, 신청인들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 또는 공유자들이다(신청인별로 소유현황 등은 별지 1 기재와 같고, 다만, 현재 신청인들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신청인들은 그 괄호안에 소유하고 있는 동호수를 표시하였다).

나. 신청인들 아파트 101동은 6개 라인(각 층당 6세대) 12층으로 72세대(32평형)이고, 102동은 8개 라인(각 층당 8세대) 12층으로 96세대(24평형)이며, 101동 1호 내지 4호 라인 앞에는 2층 규모의 상가동이 위치하고 8개의 상가(1층에 6개, 2층에 2개)가 입주해 있는데, 신청인들 아파트는 주채광면이 남향으로 되어 있고, 이미 그 남쪽에 건축되어 있던 ○○○○1단지아파트가 5층에 불과하여 5층 이상의 층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시야가 확보된 상태였다.

다. 피신청인 ○○○○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신청인 조합이라 한다)은 울산 ○○ ○○동 000-6 외 6필지 상에 건축되어 있던 ○○○○1단지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하여 2002. 11. 9.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사업계획안을 가결한 후, 울산광역시 ○○청장으로부터 2003. 12. 16.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한편, 피신청인 조합은 2002. 11. 9. 피신청인 ○○건설 주식회사(이하, 피신청인 회사라 한다)를 시공사로 선정한 후 2003. 6. 29. 피신청인 회사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고, 울산광역시 ○○청장으로부터 2004. 6. 9. 지상 14층 내지 25층 규모의 총 2,421세대(1단지 15개동 1,370세대, 2단지 14개동 1,051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피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 조합과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2004. 8. 9. 기존의 ○○○○1단지아파트에 관한 철거공사를 시작하였으며, 2005. 6. 29. 울산광역시 ○○청장에 대하여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재건축공사를 시작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는 총 2,421세대 중 2,419세대에 대한 분양이 완료되었고, 현재 터파기 공사를 완료하고, 골조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마. 이 사건 아파트 중 신청인들 아파트에 가장 근접한 장소에 남북방향(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면 동향)으로 110동, 112동, 114동이, 그 다음으로 동서방향(남향)으로 109동, 111동, 113동, 115동이, 그 다음으로 남북방향으로 108동, 105동, 103동, 101동이 각가 배치될 계획이고, 직선으로 가장 근거리는 이 사건 아파트 112동과 신청인들 아파트 101동으로 39.20m, 원거리는 이 사건 아파트 113동과 신청인들 아파트 102동으로 63.90m에 이른다. 이 사건 아파트의 배치는 별지 2 도면 표시와 같고, 별지 2 도면 표시 110동 a라인은 14층, b라인은 19층, 112동 c라인은 14층, d라인은 19층, 114동 e라인은 14층, f라인은 19층, 109동은 22층, 111동 · 113동 · 115동 · 108동 · 105동 · 103동은 각 25층, 101동 g라인은 20층, h라인은 22층, i라인은 24층으로 건축될 예정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신청인들의 주장

신축 중인 이 사건 아파트가 계획대로 완공될 경우 신청인들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권의 침해를 입게 됨은 물론, 조망권 및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소음이나 교통량의 증가 등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입게 되므로, 그와 같은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는 신청취지 기재 이상의 층수를 초과하여 공사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피신청인들의 주장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일조권 침해로 인한 피해는 추후 금전적 배상 가능성이 가능함에 반하여, 이 사건 가처분이 인용되어 일정 층수 이상을 건축하지 못하게 될 경우

피신청인들이 입게 될 손해는 금전적으로는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일정 층수 이상의 공사가 금지됨으로 인하여 그에 해당하는 수분양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게 됨은 물론,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의 아파트를 포함한 주변의 환경이 크게 개선될 예정인데, 이익형량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들이 침해받은 일조권보다 피신청인들 등이 입게 될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처분을 인용할 긴급하고도 중대할 정도의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

3. 일조 침해를 원인으로 한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인근 토지상의 소유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야 할 것이고, 일조방해행위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의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한편,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이하, 연속일조시간이라 한다) 또는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이하, 총 일조시간이라 한다)”에 일응 수인한도를 넘지 않은 것으로, 위 두가지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일조방해의 경우에는 일응 수인한도를 넘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등 참조).

나. (1) 살피건대, 소갑제4호증의 1, 3(부경대학교 기술산업연구원이 작성한 일조환

경에 관한 영향평가보고서), 소을제16호증(인텔리전트솔루션즈가 작성한 일조분석보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가 앞서 본 당초의 사업계획대로 건축될 경우 신청인들 아파트 101동의 경우 전체 72세대 중 68세대가, 102동의 경우 전체 세대인 92세대가, 상가동의 경우 전체 8개 점포 모두가 연속일조시간 2시간 또는 총 일조시간 4시간 중 어느 기준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인정된다(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 전 일조시간과 건축될 경우의 일조시간은 별지 3 ‘일조시간 분석’과 같다).

다만, 소을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신청인들 상가동 1층 1호, 2호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 건축 전에도 연속일조 시간이 2시간에, 총 일조시간이 4시간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상가동이 101동보다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소을제16호증의 기재 중 상가동 1층 1호, 2호에 대한 부분은 선뜻 믿기 어려우므로 그 부분에 관하여는 소갑제4호증의 3을 취신하기로 한다.

(2) 위 일조시간분석에 의하면, 신청인들 아파트 101동 101호 소유자인 신청인 ○○○, 102호 소유자인 신청인 ○○○, 103호 소유자인 신청인 ○○○, 104호 소유자인 ○○○의 경우, 신청인들 아파트 상가동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 전에 이미 연속일조시간이나 총 일조시간에서 위 수인한도의 기준에 못미치는 일조를 향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완공에 의하여 일조침해를 받을 여지가 없어 일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신청인 ○○○, ○○○, ○○○, ○○○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다.

한편, 위 일조시간 분석에 의하면, 위 4인의 신청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가 당초의 계획대로 완공될 경우 그로 인하여 앞서 본 동지를 기준으로 하여 확보되어야 할 연속일조시간 및 총일조시간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일조만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기존에 누리던 일조의 대부분을 침해받게 된다고 할 것이어서 일조권 침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아파트 및 신청인들 아파트 모두 주거지역에 위치하는 점,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 건축과 관련하여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입게 되는 일조침해 등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교섭하였다는 정황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신청인들이 입게 되는 일조침해는 그 수인한도를 넘은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신청인들은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소유권 또는 인격권에 기하여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그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인정된다.

(3)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일조권 침해를 원인으로 공사금지를 구하는 이 사건 가처분의 경우에는 일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보다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해야 할 것인바,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 건축과 관련하여 건축관련법령상 적법하게 사업승인을 받았고, 신청인들의 아파트와 이 사건 아파트는 가깝게는 39.20m, 멀게는 63.90m 떨어져 있으며, 신청인들 아파트와 가장 근접한 110동, 112동, 114동의 경우 층수를 14층으로 하는 등 이 사건 아파트를 계단식으로 설계하여 일조침해를 최소화하였고, 동지가 아닌 춘분 또는 추분과 하지의 경우에는 일조권 침해가 수인한도 내이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사건 아파트로 인한 신청인들에 대한 일조권 침해는 수인한도의 범위 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일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나, 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그 방해배제나 예방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근거되는 권리는 소유권 또는 인격권으로 양자가 동일하므로,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한 공사금지가처분

의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보다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해야 한다고 볼 특별한 근거가 없고,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규정 등이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증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인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 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별지 3 ‘일조시간 분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가 완공될 경우 위 신청인들 소유 세대의 상당수가 연속일조시간 및 총 일조시간이 모두 0이 되기도 하는 등 그 침해정도가 중대하므로, 그 수인한도를 넘는 위법행위임라는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 한편, 동지를 기준으로 연속일조시간 또는 총 일조시간을 측정하고 수인한도의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동지에 연중 일조시간이 가장 짧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한 연속일조시간 또는 총 일조시간이 앞서 본 기준 이하라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라고 인정하는 것으로, 개인이 향유할 수 있는 최소한 일조량의 기준, 즉 일조권에 대한 침해로 인한 위법성판단의 최소기준을 설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지보다 일조량이 많은 춘분이나 추분, 또는 하지의 연속일조시간이나 총 일조시간이 그보다 많고, 그 기준이 앞서 본 기준에 충족한다고 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다.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아파트가 신청취지 기재 이상의 층수를 초과할 경우 신청인들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권의 침해를 입게 될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일조권의

침해는 단순히 신청인들에 대한 소유권의 제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정신적, 심리적 효과 등 간접적인 효과를 포함하여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등 인격권과 관련된 것이어서 그 피해가 장래의 금전적 배상으로 전부 회복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아파트 및 신청인들 아파트는 모두 주거지역에 위치하는 사정, 이 사건 가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층수가 일정한 정도가 제한될 경우 피신청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신청인들이 입게 될 금전적 손해와 해당 수분양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은 되나, 이는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입게 될 인근 주민들의 일조 침해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다소 무리하게 사업계획을 추진한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신청인들이 감수하여야 할 것인 점, 이 사건 아파트의 완공으로 인근 주변의 주거환경이나 교통환경 등의 기타 여건이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그 개선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입게 될 일조권 침해의 정도가 완화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보전의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고 하겠다.

라. 공사금지의 범위

다만,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한 수인한도가 넘는 일조방해를 초래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공사를 금지시켜야 할 것이고, 소갑제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신청취지 기재의 층수로 건축될 경우에는 신청인들의 수인한도의 범위 내인 것으로 소명되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신청취지와 같이 신청인들이 구하는 범위 내로 제한하기로 한다.

4. 신청인 ○○○, ○○○, ○○○, ○○○의 경우 조망권, 사생활 침해 등을 원인으로 한 피보전권리의 존재 여부

기록에 의하면, 위 신청인들이 소유하는 신청인들 아파트 101동 101, 102, 103, 104호는 그 앞에 신청인들 아파트의 상가동이 이미 건축되어 있음은 위 신청인들이 자인하고 있고, 소갑제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위 신청인들 소유의 101동 102 내지 104호는 이 사건 아파트 건축 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연속일조시간과 총 일조시간이 0이고, 101호의 경우 연속일조시간이 1시간 03분, 총 일조시간이 1시간 39분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신청인들이 조망권으로 보호될 만한 조망이익을 누리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아파트와 신청인들 아파트의 직선 거리 및 위와 같은 위 신청인들 소유의 101동 101호 내지 104호의 주변환경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아파트의 완공으로 인하여 사생활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조망권이 침해된다거나 사생활이 침해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한편, 소음이나 교통량의 증가로 인하여 위 신청인들의 생활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아무런 소명자료가 없다.

따라서, 조망권,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소음이나 교통량의 증가로 인한 생활이익이 침해됨을 이유로 한 위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 ○○○, ○○○, ○○○, ○○○를 제외한 나머지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인용하기로 하고, 신청인 ○○○, ○○○, ○○○, ○○○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9. 22.

재판장	판사	0 0 0
-----	----	-------

	판사	0 0 0
--	----	-------

	판사	0 0 0
--	----	-------

별지 1 당사자 목록

1. 0 0 0
울산시 ○○ ○○동 000-13 ○○○○아파트 101동 101호
2. 0 0 0
울산시 ○○ ○○동 000-13 ○○○○아파트 101동 102호
3. 0 0 0
울산시 ○○ ○○동 000-13 선0 0 0 아파트 에이동 103호
(0 0 ○○아파트 101동 103호)
4. 0 0 0
울산시 ○○ 선암동 672-6 삼도가든맨션 703호
(○○○○아파트 101동 104호)
5. 0 0 0
울산시 ○○ ○○동 725-13 ○○○○아파트 에이동 105호
(○○○○아파트 101동 105호)
6. 0 0 0
울산시 ○○ ○○동 725-13 ○○○○아파트 101동 106호
7. 0 0 0
울산시 ○○ ○○동 712-6 ○○아파트 40동 207호
(○○○○아파트 101동 201호)
8. 김 0 겹
울산시 울주군 온양면 운화리 1138(○○○○아파트 101동 202호)
9. 이 0 란
울산시 ○○ ○○동 725 ○○아파트 207동 102호
(○○○○아파트 101동 203호)
10. 오 0 옥
울산시 ○○ ○○동 725-13 ○○○○아파트 101동 204호
11. 한 0 근
울산시 ○○ ○○동 725-13 ○○○○아파트 101동 205호
12. 권 0 기
울산시 ○○ ○○동 725-13 ○○○○아파트 101동 206호
13. 황 0 도
울산시 ○○ 0 0 동 705-14(○○○○아파트 101동 301호)
14. 정 0 현

- 울산시 ○○ ○○동 725-13 ○○○○아파트 에이동 302호
(○○○○아파트 101동 302호)
15. 김 0 현
울산시 ○○ ○○동 725 ○○아파트 202동 102호
(○○○○아파트 101동 303호)
16. 손 0 하
울산시 ○○ ○○동 789-6 ○○○○아파트 201동 208호
(○○○○아파트 101동 304호)
17. 이 0 원
울산시 ○○ ○○동 725-13 ○○○○아파트 에이동 305호
(○○○○아파트 101동 305호)
18. 이 0 창
울산시 ○○ ○○동 725-13 ○○○○아파트 101동 306호
19. 김 0 주
울산시 ○○ ○○동 725-1 ○○사택 비동 208호
(○○○○아파트 101동 401호)
- 20 김 0 호
울산시 ○○ ○○동 725-13 ○○○○아파트 에이동 402호
(○○○○아파트 101동 402호)
21. 표 0 팔
울산시 ○○ ○○동 725-13 ○○○○아파트 에이동 403호
(○○○○아파트 101동 403호)
22. 박 0 근
울산시 ○○ 신정동 891-9(○○○○아파트 101동 404호)
23. 김 0 남
울산시 ○○ 무거동 477-1 ○○○○1단지아파트 108동 602호
(○○○○아파트 101동 405호)
24. 박 0 덕
인천 남동구 ○○동 563-3 ○○○○아파트 201동 604호
(○○○○아파트 101동 406호)
25. 김 0 숙
울산시 ○○ ○○동 725-13 ○○○○아파트 101동 501호
26. 장 0 구
울산시 ○○ ○○동 725-1 ○○사택 비동 107호
(○○○○아파트 101동 502호)
27. 심 0 현

- 울산시 ○○ ○○동 725-13 ○○○○아파트 에이동 503호
(○○○○아파트 101동 503호)
28. 김 0 수
울산시 ○○ ○○동 725-13 ○○○○아파트 101동 504호
29. 박 0 환
울산시 ○○ 선암동 620-2 동서○○맨션 1203호
(○○○○아파트 101동 505호)
30. 김 0 수
울산시 ○○ ○○동 703-5(○○○○아파트 101동 506호)
31. 백 0 도
울산시 ○○ ○○동 725-13 ○○○○아파트 에이동 601호
(○○○○아파트 101동 601호)
32. 홍 0 표
울산시 ○○ ○○동 725-13 ○○○○아파트 에이동 602호
(○○○○아파트 101동 602호)
33. 정 0 윤
울산시 ○○ ○○동 712 ○○아파트 10동 303호
(○○○○아파트 101동 603호)
34. 장 0 기
울산시 ○○ ○○동 712-6 ○○아파트 30동 102호
(○○○○아파트 101동 604호)
35. 이 0 송
울산시 ○○ ○○동 725-13 ○○○○아파트 에이동 605호
(○○○○아파트 101동 605호)
36. 김 0 수
울산시 ○○ ○○동 725-13 ○○○○아파트 101동 606호
37. 강 0 재
울산시 ○○ ○○동 725-13 ○○○○아파트 에이동 701호
(○○○○아파트 101동 701호)
38. 김 0 기
울산시 ○○ ○○동 725-13 ○○○○아파트 에이동 702호
(○○○○아파트 101동 702호)
39. 양 0 명
울산시 ○○ 부곡동 47-308(○○○○아파트 101동 703호)
40. 윤 0 중
울산시 ○○ ○○동 725 ○○아파트 202동 201호

(○○○○아파트 101동 704호)

41. 김 0 조

울산시 ○○ 황성동 393-1(○○○○아파트 101동 705호)

42. 이 0 재

울산시 ○○ ○○동 725-13 ○○○○아파트 에이동 706호
(○○○○아파트 101동 706호)

43. 박 0 배

울산시 ○○ ○○동 725-13 ○○○○아파트 101동 801호

44. 이 0 엽

울산시 ○○ ○○동 725-13 ○○○○아파트 101동 802호

45. 김 0 자

울산시 ○○ ○○동 725-13 ○○○○아파트 101동 803호

46. 성 0 문

울산시 ○○ ○○동 725 ○○아파트 208동 102호
(○○○○아파트 101동 804호)

47. 윤 0 영

울산시 ○○ ○○동 725-13 ○○○○아파트 에이동 805호
(○○○○아파트 101동 805호)

48. 유 0 홍

울산시 ○○ ○○동 725-13 ○○○○아파트 에이동 806호
(○○○○아파트 101동 806호)

49. 윤 0 아

울산시 ○○ ○○동 725-13 ○○○○아파트 101동 901호

50. 최 0 대

울산시 ○○ ○○동 725-13 ○○○○아파트 에이동 902호
(○○○○아파트 101동 902호)

51. 배 0 순

울산시 ○○ ○○동 471-126 ○○연립 102호
(○○○○아파트 101동 903호)

52. 황 0 하

울산시 ○○ ○○동 725-13 ○○○○아파트 에이동 904호
(○○○○아파트 101동 904호)

53. 김 0 광

울산시 북구 중산동 621 현대글로리아 2동 1909호
(○○○○아파트 101동 905호)

54. 정 0 교

- 울산시 ○○ ○○동 868-1 ○○전원아파트 107동 204호
(○○○○아파트 101동 906호)
55. 박 0 홍
울산시 ○○ ○○동 725-13 ○○○○아파트 101동 1001호
56. 유 0 열
울산시 ○○ ○○동 725-13 ○○○○아파트 에이동 1002호
(○○○○아파트 101동 1002호)
57. 류 0 임 (3/5 지분 소유)
울산시 ○○ ○○동 725-13 ○○○○아파트 에이동 1003호
(○○○○아파트 101동 1003호)
58. 안 0 식 (2/5 지분 소유)
울산시 ○○ ○○동 725-13 ○○○○아파트 에이동 1003호
(○○○○아파트 101동 1003호)
59. 임 0 승
울산시 ○○ ○○동 725-13 ○○○○아파트 에이동 1004호
(○○○○아파트 101동 1004호)
60. 황 0 왕(1/2지분 소유)
울산시 ○○ ○○동 725-13 ○○○○아파트 에이동 1005호
(○○○○아파트 101동 1005호)
61. 김 0 숙(1/2 지분 소유)
울산시 ○○ ○○동 725-13 ○○○○아파트 에이동 1005호
(○○○○아파트 101동 1005호)
62. 최 0 흥
울산시 ○○ ○○동 725-13 ○○○○아파트 에이동 1006호
(○○○○아파트 101동 1006호)
63. 이 0 용
울산시 ○○ ○○동 725-13 ○○○○아파트 101동 1101호
64. 박 0 상
울산시 ○○ ○○동 725-1 ○○사택 비동 305호
(○○○○아파트 101동 1102호)
65. 이 0 만
울산시 ○○ ○○동 725-13 ○○○○아파트 101동 1103호
66. 김 0 훈
울산시 ○○ ○○동 725-13 ○○○○아파트 101동 1104호
67. 박 0 혁
울산시 ○○ ○○동 725-13 ○○○○아파트 101동 1105호

68. 김 0 호
울산시 ○○ ○○동 725-13 ○○아파트 102동 105호
(○○○○아파트 101동 1106호)
69. 방 0 용
울산시 ○○ ○○동 725-13 ○○○○아파트 101동 1201호
70. 한 0 출
울산시 ○○ ○○동 725-13 ○○○○아파트 에이동 1202호
(○○○○아파트 101동 1202호)
71. 한 0 준
울산시 ○○ ○○동 725-13 ○○○○아파트 101동 1203호
72. 이 0 수
울산시 ○○ ○○동 725-13 ○○○○아파트 에이동 1204호
(○○○○아파트 101동 1204호)
73. 안 0 수
울산시 ○○ ○○동 725-13 ○○○○아파트 에이동 1205호
(○○○○아파트 101동 1205호)
74. 이 0 윤
울산시 ○○ ○○동 725-13 ○○○○아파트 에이동 1206호
(○○○○아파트 101동 1206호)
75. 서 0 원
울산시 ○○ 신정동 260-15(○○○○아파트 102동 101호)
76. 김 0 현
울산시 ○○ ○○동 725-13 ○○○○아파트 102동 102호
77. 정 0 채
울산시 ○○ ○○동 712 ○○아파트 10동 305호
(○○○○아파트 102동 103호)
78. 장 0 남
울산시 ○○ 신정동 424-4(○○○○아파트 102동 104호)
79. 김 0 환
양산군 웅상읍 용당리 203(○○○○아파트 102동 105호)
80. 이 0 완
울산시 ○○ ○○동 725-13 ○○○○아파트 102동 106호
81. 김 0 호
울산시 ○○ ○○동 725-13 ○○○○아파트 102동 206호
(○○○○아파트 102동 107호)
82. 김 0 환

- 울산시 ○○ 무거동 833-1 ○○아파트 1509호
(○○○○아파트 102동 108호)
83. 김 0 남
울산시 ○○ ○○동 712-6 ○○아파트 40동 204호
(○○○○아파트 102동 201호)
84. 박 0 봉
울산시 ○○ ○○동 725-13 ○○○○아파트 비동 202호
(○○○○아파트 102동 202호)
85. 김 0 이
울산시 ○○ 달동 591-7(○○○○아파트 102동 203호)
86. 이 0 영
울산시 ○○ ○○동 725-13 ○○○○아파트 102동 204호
87. 우 0 대
울산시 ○○ ○○동 725-13 ○○○○아파트 비동 205호
(○○○○아파트 102동 205호)
88. 김 0 현
김해시 장유면 삼문리 62-4 쉼마을부영○○타운 7차 404동 202호
(○○○○아파트 102동 206호)
89. 윤 0 개
울산시 ○○ ○○동 712 ○○아파트 16동 205호
(○○○○아파트 102동 207호)
90. 김 0 용
울산시 ○○ ○○동 725-13 ○○○○아파트 비동 208호
(○○○○아파트 102동 208호)
91. 윤 0 학
울산시 ○○ 부곡동 47-261(○○○○아파트 102동 301호)
92. 정 0 덕
울산시 ○○ 성암동 450(○○○○아파트 102동 302호)
93. 최 0 환
울산시 ○○ ○○동 725-13 ○○○○아파트 102동 303호
94. 임 0 하
울산시 중구 교동 352-1(○○○○아파트 102동 304호)
95. 서 0 중
울산시 ○○ ○○동 725-13 ○○○○아파트 102동 305호
96. 이 0 주
울산시 ○○ ○○동 725-13 ○○○○아파트 102동 306호

97. 이 0 대
울산시 ○○ ○○동 725-13 ○○○○아파트 비동 307호
(○○○○아파트 102동 307호)
98. 안 0 용
울산시 ○○ ○○동 725-13 ○○○○아파트 비동 308호
(○○○○아파트 102동 308호)
99. 양 0 덕
울산시 ○○ ○○동 725-13 ○○○○아파트 비동 401호
(○○○○아파트 102동 401호)
100. 노 0 갑
울산시 ○○ ○○동 725-13 ○○○○아파트 102동 402호
101. 장 0 하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1329-2 ○○아파트 103동 202호
(○○○○아파트 102동 403호)
102. 김 0 미
울산시 ○○ ○○동 712-6 ○○아파트 42동 204호
(○○○○아파트 102동 404호)
103. 박 0 태
울산시 ○○ ○○동 725-13 ○○○○아파트 비동 405호
(○○○○아파트 102동 405호)
104. 장 0 배
울산시 ○○ ○○동 715(○○○○아파트 102동 406호)
105. 임 0 범
울산시 ○○ ○○동 725-13 ○○○○아파트 비동 407호
(○○○○아파트 102동 407호)
106. 유 0 호
울산시 ○○ ○○동 725-13 ○○○○아파트 102동 408호
107. 남 0 용
부산 수영구 망미동 산87-11(○○○○아파트 102동 501호)
108. 박 0 철
울산 중구 우정동 277-23(○○○○아파트 102동 502호)
109. 안 0 희
울산시 ○○ ○○동 712-6 ○○아파트 44동 301호
(○○○○아파트 102동 503호)
110. 대한예수교장로회 0 0 교회
울산시 ○○ ○○동 721-18

대표자 최 0 0

(○○○○아파트 102동 504호)

111. 김 0 수

울산시 ○○ ○○동 725-13 ○○○○아파트 비동 505호

(○○○○아파트 102동 505호)

112. 서 0 호

울산시 중구 우정동 286-7 용궁아파트 309호

(○○○○아파트 102동 506호)

113. 여 0 중

울산시 ○○ ○○동 725-13 ○○○○아파트 102동 507호

114. 이 0 오

울산 울주군 웅촌면 대북리 302 ○○한솔아파트 702동 1201호

(○○○○아파트 102동 508호)

115. 박 0 철

울산시 ○○ ○○동 868-3 그랜드타운 612호

(○○○○아파트 102동 601호)

116. 김 0 태

울산시 ○○ ○○동 725-13 ○○○○아파트 비동 602호

(○○○○아파트 102동 602호)

117. 안 0 석

울산시 ○○ ○○동 725-13 ○○○○아파트 102동 603호

118. 진 0 진

울산시 ○○ ○○동 725-13 ○○○○아파트 비동 604호

(○○○○아파트 102동 604호)

119. 김 0 근

울산시 ○○ ○○동 725-13 ○○○○아파트 비동 605호

(○○○○아파트 102동 605호)

120. 손 0 필

울산시 ○○ ○○동 712 ○○아파트 21동 406호

(○○○○아파트 102동 606호)

121. 권 0 순

울산시 ○○ ○○동 725-13 ○○○○아파트 102동 607호

122. 서 0 원

울산시 ○○ ○○동 725-13 ○○○○아파트 비동 608호

(○○○○아파트 102동 608호)

123. 이 0 진

- 울산시 ○○ ○○동 725-13 ○○○○아파트 102동 701호
124. 배 0 규
울산시 ○○ ○○동 725-13 ○○○○아파트 102동 702호
125. 김 0 수
울산시 ○○ ○○동 725-13 ○○○○아파트 102동 703호
126. 신 0 택 (1/2 지분소유)
울산시 ○○ ○○동 725-13 ○○○○아파트 102동 704호
127. 최 0 정 (1/2 지분소유)
울산시 ○○ ○○동 725-13 ○○○○아파트 102동 704호
128. 최 0 호
울산시 ○○ ○○동 712 ○○아파트 12동 304호
(○○○○아파트 102동 705호)
129. 이 0 래
울산시 ○○ ○○동 725-13 ○○○○아파트 비동 706호
(○○○○아파트 102동 706호)
130. 김 0 배
울산시 ○○ ○○동 725-13 ○○○○아파트 102동 707호
131. 오 0 걸
울산시 ○○ ○○동 725-13 ○○○○아파트 비동 708호
(○○○○아파트 102동 708호)
132. 김 0 기
울산시 ○○ ○○동 725-13 ○○○○아파트 비동 801호
(○○○○아파트 102동 801호)
133. 한 0 희
울산시 ○○ ○○동 725-1 ○○사택 에이동 301호
(○○○○아파트 102동 802호)
134. 신 0 범
울산시 ○○ ○○동 725-13 ○○○○아파트 비동 803호
(○○○○아파트 102동 803호)
135. 이 0 수
울산시 ○○ ○○동 725-13 ○○○○아파트 비동 804호
(○○○○아파트 102동 804호)
136. 장 0 식
울산시 ○○ ○○동 725-13 ○○○○아파트 비동 805호
(○○○○아파트 102동 805호)
137. 박 0 옥

- 울산시 ○○ ○○동 725-13 ○○○○아파트 비동 806호
(○○○○아파트 102동 806호)
138. 윤 0 길
울산시 ○○ ○○동 725-13 ○○○○아파트 비동 807호
(○○○○아파트 102동 807호)
139. 박 0 진
울산시 ○○ 신정동 949-1 ○○아파트 1동 306호
(○○○○아파트 102동 808호)
140. 차 0 열
울산시 ○○ ○○동 725-13 ○○○○아파트 비동 901호
(○○○○아파트 102동 901호)
141. 최 0 규
울산시 ○○ 신정동 955-17(○○○○아파트 102동 902호)
142. 이 0 화
울산시 ○○ ○○동 725-13 ○○○○아파트 102동 903호
143. 박 0 열
울산시 ○○ ○○동 725-13 ○○○○아파트 비동 904호
(○○○○아파트 102동 904호)
144. 최 0 수
울산시 ○○ 무거동 833-1 ○○아파트 807호
(○○○○아파트 102동 905호)
145. 남 0 희
울산시 ○○ ○○동 725-13 ○○○○아파트 비동 906호
(○○○○아파트 102동 906호)
146. 오 0 식
울산시 ○○ ○○동 725-13 ○○○○아파트 102동 907호
147. 정 0 원
울산시 ○○ 달동 683-1 ○○사사원아파트 703호
(○○○○아파트 102동 908호)
148. 양 0 호
울산시 ○○ ○○동 725-13 ○○○○아파트 102동 1001호
149. 노 0 옥
울산시 ○○ ○○동 712-6 ○○아파트 46동 504호
(○○○○아파트 102동 1002호)
150. 박 0 제
울산시 ○○ 신정동 811-15(○○○○아파트 102동 1003호)

151. 이 0 옥
울산시 ○○ ○○동 725-13 ○○○○아파트 비동 1004호
(○○○○아파트 102동 1004호)
152. 박 0 문
울산시 ○○ ○○동 725-13 ○○○○아파트 102동 1005호
153. 이 0 숙
울산시 ○○ ○○동 725-13 ○○○○아파트 102동 408호
(○○○○아파트 102동 1006호)
154. 최 0 걸
울산시 ○○ ○○동 725-13 ○○○○아파트 비동 1007호
(○○○○아파트 102동 1007호)
155. 이 0 화
울산시 ○○ ○○동 725-13 ○○○○아파트 비동 1008호
(○○○○아파트 102동 1008호)
156. 이 0 철
울산시 ○○ ○○동 725-13 ○○○○아파트 102동 1101호
157. 손 0 열
울산시 ○○ ○○동 712 ○○아파트 13동 304호
(○○○○아파트 102동 1102호)
158. 윤 0 현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399(○○○○아파트 102동 1103호)
159. 김 0 태
울산시 ○○ ○○동 725-13 ○○○○아파트 비동 1104호
(○○○○아파트 102동 1104호)
160. 정 0 호
울산시 ○○ ○○동 725-13 ○○○○아파트 102동 1105호
161. 권 0 철
울산시 ○○ 무거동 283-6(○○○○아파트 102동 1106호)
162. 최 0 연
울산시 ○○ ○○동 800-25(○○○○아파트 102동 1107호)
163. 박 0 석
울산시 ○○ ○○동 379-15(○○○○아파트 102동 1108호)
164. 김 0 진
울산시 ○○ 황성동 600 ○○인더스트리 기숙사
(○○○○아파트 102동 1201호)
165. 김 0 숙

- 울산시 ○○ ○○동 725-13 ○○○○아파트 102동 1202호
166. 권 0 호
울산시 ○○ ○○동 712 ○○아파트 16동 106호
(○○○○아파트 102동 1203호)
167. 이 0 계
울산시 ○○ 선암동 679-3 ○○전원아파트 105동 307호
(○○○○아파트 102동 1204호)
168. 정 0 규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890(○○○○아파트 102동 1205호)
169. 김 0 분
울산시 ○○ ○○동 725-13 ○○○○아파트 비동 1206호
(○○○○아파트 102동 1206호)
170. 조 0 희
울산시 ○○ ○○동 725-13 ○○○○아파트 비동 1207호
(○○○○아파트 102동 1207호)
171. 서 0 형
울산시 ○○ 신정동 859-28(○○○○아파트 102동 1208호)
172. 안 0 용
울산시 ○○ ○○동 725-13 ○○○○아파트 102동 505호
(○○○○아파트 제상가동 1층 1호)
173. 정 0 조
울산시 ○○ ○○동 725-13 ○○○○아파트 101동 106호
(○○○○아파트 제상가동 1층 2호)
174. 김 0 수
울산시 ○○ 선암동 545-2 ○○금속사택 11동 507호
(○○○○아파트 제상가동 1층 3호)
175. 손 0 숙
울산시 ○○ ○○동 725 ○○아파트 206동 406호
(○○○○아파트 제상가동 1층 4호)
176. 손 0 택
울산시 ○○ ○○동 725 ○○아파트 211동 506호
(○○○○아파트 제상가동 1층 5호)
177. 윤 0 성
울산시 ○○ ○○동 730-5 ○○아파트 215동 408호
(○○○○아파트 제상가동 1층 6호)
178. 이 0 자

울산시 ○○ 신정동 878(○○○○아파트 제상가동 2층 1호)

179. 이 0 협

울산시 ○○ ○○동 725-13 ○○○○상가 2-2

(○○○○아파트 제상가동 2층 2호)

별지 2 도면

별지 3 일조시간 분석

※일조 시간은 예컨대, 1시간 30분의 경우 1.30으로 표시하였다.

(소을제16호증에서는 총일조시간과 연속일조시간은 분석기준을 달리함에 따라 총일조시간보다 연속일조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부기하고 있다.)

○신청인들 아파트 101동

호수	소갑제4호증의 1				소을제16호증			
	건축전 일조시간		건축후 일조시간		건축전 일조시간		건축후 일조시간	
	연속일조	총일조	연속일조	총일조	연속일조	총일조	연속일조	총일조
101	1.03	1.39	0	0	1.26	2.38	0	0.02
201	6.00	7.00	0	0	6.00	6.49	0.04	0.06
301	6.00	7.14	0	0	6.00	7.20	0.04	0.06
401	6.00	7.15	0	0	6.00	7.23	0.04	0.06
501	6.00	7.18	0	0	6.00	7.27	0.04	0.06
601	6.00	7.22	0	0	6.00	7.31	0.04	0.06
701	6.00	7.27	0	0	6.00	7.34	0.04	0.06
801	6.00	7.30	0	0	6.00	7.40	0.04	0.06
901	6.00	7.34	0	0	6.00	7.46	0.04	0.06
1001	6.00	7.37	0	0	6.00	7.50	0.04	0.17
1101	6.00	7.41	0.26	0.26	6.00	7.53	0.30	0.38
1201	6.00	7.46	0.35	0.35	6.00	7.58	0.33	0.42
102	0	0	0	0	0	1.37	0	0
202	6.00	7.07	0	0	5.42	6.12	0	0
302	6.00	7.23	0	0.15	6.00	7.23	0	0
402	6.00	7.23	0	0.15	6.00	7.27	0	0
502	6.00	7.24	0	0.15	6.00	7.30	0	0
602	6.00	7.27	0	0.15	6.00	7.33	0	0
702	6.00	7.31	0	0.15	6.00	7.38	0	0.01
802	6.00	7.35	0	0.15	6.00	7.42	0	0.03
902	6.00	7.37	0	0.15	6.00	7.46	0	0.04
1002	6.00	7.41	0.02	0.19	6.00	7.52	0.17	0.26
1102	6.00	7.45	0.38	0.53	6.00	7.56	0.37	0.39
1202	6.00	7.48	0.44	0.59	6.00	7.58	0.43	0.47
103	0	0	0	0	0	1.10	0	0
203	6.00	7.12	0	0.09	6.00	6.59	0	0
303	6.00	7.33	0	0.20	6.00	7.33	0	0
403	6.00	7.33	0	0.20	6.00	7.38	0	0
503	6.00	7.33	0	0.20	6.00	7.38	0	0.01
603	6.00	7.33	0	0.20	6.00	7.38	0	0.09
703	6.00	7.35	0	0.20	6.00	7.42	0	0.20
803	6.00	7.39	0	0.20	6.00	7.46	0.09	0.31

903	6.00	7.43	0.12	0.32	6.00	7.49	0.15	0.36
1003	6.00	7.45	0.23	0.43	6.00	7.52	0.41	0.57
1103	6.00	7.48	0.41	1.01	6.00	7.50	0.45	1.06
1203	6.00	7.51	0.50	1.10	6.00	8.00	0.52	1.13
104	0	0	0	0	0	1.31	0	0.01
204	6.00	7.12	0.13	0.20	6.00	6.41	0	0.09
304	6.00	7.35	0.14	0.25	6.00	7.38	0.01	0.11
404	6.00	7.39	0.14	0.25	6.00	7.42	0.01	0.20
504	6.00	7.41	0.14	0.25	6.00	7.42	0.01	0.27
604	6.00	7.41	0.14	0.25	6.00	7.42	0.01	0.28
704	6.00	7.41	0.14	0.25	6.00	7.44	0.08	0.35
804	6.00	7.43	0.14	0.37	6.00	7.48	0.14	0.40
904	6.00	7.47	0.18	0.43	6.00	7.52	0.21	0.47
1004	6.00	7.50	0.27	0.52	6.00	7.55	0.36	1.03
1104	6.00	7.52	0.42	1.07	6.00	7.58	0.48	1.13
1204	6.00	7.54	0.46	1.11	6.00	8.00	0.52	1.20
105	3.52	4.52	0.31	0.31	4.03	4.09	0.32	0.32
205	6.00	7.31	0.31	0.43	6.00	7.12	0.32	0.43
305	6.00	7.35	0.31	0.43	6.00	7.48	0.32	0.43
405	6.00	7.40	0.31	0.43	6.00	7.52	0.32	0.43
505	6.00	7.44	0.31	0.43	6.00	7.52	0.32	0.43
605	6.00	7.47	0.31	0.43	6.00	7.52	0.32	0.43
705	6.00	7.49	0.31	0.43	6.00	7.52	0.32	0.43
805	6.00	7.50	0.31	0.45	6.00	7.52	0.32	0.48
905	6.00	7.50	0.31	0.51	6.00	7.54	0.32	0.55
1005	6.00	7.54	0.31	0.59	6.00	7.58	0.32	1.04
1105	6.00	7.57	0.37	1.08	6.00	8.00	0.38	0.11
1205	6.00	7.59	0.38	1.09	6.00	8.00	0.39	1.13
106	5.58	6.58	0.30	0.44	5.44	5.27	0.32	0.43
206	6.00	7.31	0.30	0.44	6.00	7.12	0.32	0.44
306	6.00	7.35	0.30	0.44	6.00	7.48	0.32	0.44
406	6.00	7.40	0.30	0.44	6.00	7.56	0.32	0.44
506	6.00	7.44	0.30	0.44	6.00	7.58	0.32	0.44
606	6.00	7.48	0.30	0.44	6.00	7.58	0.32	0.44
706	6.00	7.51	0.30	0.44	6.00	7.58	0.32	0.44
806	6.00	7.54	0.30	0.44	6.00	7.58	0.32	0.47
906	6.00	7.56	0.30	0.47	6.00	7.58	0.32	0.54
1006	6.00	7.57	0.34	0.58	6.00	7.58	0.33	1.04
1106	6.00	8.00	0.34	1.06	6.00	8.00	0.36	1.10
1206	6.00	8.00	0.34	1.06	6.00	8.00	0.36	1.14

○신청인들 아파트 상가동

층수	호수	소갑제4호증의 1				소을제16호증			
		건축전 일조시간		건축후 일조시간		건축전 일조시간		건축후 일조시간	
		연속일조	총일조	연속일조	총일조	연속일조	총일조	연속일조	총일조
1층	1	6.00	7.11	0	0	1.40	2.30	0	0.05
	2	6.00	7.11	0	0	1.18	3.04	0	0
	3	6.00	7.11	0	0	2.16	4.11	0	0
	4	6.00	7.12	0	0.13	4.27	4.55	0	0.01
	5	6.00	7.12	0.14	0.36	4.39	4.19	0	0.10
	6	6.00	7.12	0.17	0.44	4.28	3.50	0.09	0.12
2층	1(-1)	6.00	7.20	0	0	5.32	7.14	0	0.02
	(-2)					6.00	7.20	0	0
	(-3)					6.00	7.17	0	0
	2(-1)	6.00	7.20	0	0	6.00	7.15	0	0.07
	(-2)					6.00	6.35	0.14	0.13
	(-3)					5.42	5.59	0.15	0.16

※을제16호증은 신청인들 아파트 상가동 2층을 2층 1-1, 1-2, 1-3, 2-1, 2-2, 2-3으로 구분하여 일조량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위 표와 같다. 그러나, 소갑제1호증의 175, 17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신청인들 상가동은 2층은 제1호와 제2호로 구분등기되어 있다.

○신청인들 아파트 102동

호수	소갑제4호증의 1				소을제16호증			
	건축전 일조시간		건축후 일조시간		건축전 일조시간		건축후 일조시간	
	연속일조	총일조	연속일조	총일조	연속일조	총일조	연속일조	총일조
101	6.00	7.26	0	0	5.49	6.29	0.11	0.11
201	6.00	7.31	0	0	6.00	7.20	0.12	0.13
301	6.00	7.36	0	0	6.00	7.50	0.14	0.15
401	6.00	7.40	0.07	0.07	6.00	7.56	0.15	0.15
501	6.00	7.44	0.11	0.11	6.00	7.58	0.15	0.15
601	6.00	7.48	0.12	0.12	6.00	8.00	0.15	0.15
701	6.00	7.52	0.14	0.15	6.00	8.00	0.15	0.17
801	6.00	7.56	0.14	0.27	6.00	8.00	0.15	0.30
901	6.00	7.59	0.15	0.31	6.00	8.00	0.17	0.32
1001	6.00	8.00	0.15	0.31	6.00	8.00	0.21	0.38
1101	6.00	8.00	0.15	0.35	6.00	8.00	0.22	0.40
1201	6.00	8.00	0.18	0.39	6.00	8.00	0.22	0.45
102	6.00	7.28	0	0	5.52	6.35	0.01	0
202	6.00	7.31	0	0	6.00	7.47	0.04	0.04
302	6.00	7.36	0	0	6.00	7.52	0.07	0.07
402	6.00	7.40	0	0	6.00	7.56	0.09	0.09
502	6.00	7.44	0	0	6.00	7.58	0.13	0.14
602	6.00	7.48	0	0	6.00	8.00	0.17	0.15
702	6.00	7.52	0	0	6.00	8.00	0.24	0.15
802	6.00	7.56	0	0.08	6.00	8.00	0.25	0.15
902	6.00	7.59	0	0.12	6.00	8.00	0.25	0.15
1002	6.00	8.00	0	0.16	6.00	8.00	0.32	0.17
1102	6.00	8.00	0.14	0.31	6.00	8.00	0.30	0.17
1202	6.00	8.00	0.16	0.43	6.00	8.00	0.50	0.17
103	6.00	7.30	0	0	6.00	7.20	0	0
203	6.00	7.33	0	0	6.00	7.48	0	0
303	6.00	7.36	0	0	6.00	7.52	0	0
403	6.00	7.40	0	0	6.00	7.56	0	0
503	6.00	7.44	0	0	6.00	7.58	0	0
603	6.00	7.48	0	0	6.00	8.00	0	0.01
703	6.00	7.52	0	0	6.00	8.00	0	0.07
803	6.00	7.56	0	0	6.00	8.00	0	0.10
903	6.00	7.59	0	0	6.00	8.00	0	0.20
1003	6.00	8.00	0.19	0.19	6.00	8.00	0.25	0.40
1103	6.00	8.00	0.30	0.39	6.00	8.00	0.28	0.43
1203	6.00	8.00	0.43	0.55	6.00	8.00	0.52	1.04
104	6.00	7.32	0	0	6.00	6.58	0	0
204	6.00	7.35	0	0	6.00	7.48	0	0
304	6.00	7.37	0	0	6.00	7.52	0	0
404	6.00	7.40	0	0	6.00	7.56	0	0

504	6.00	7.44	0	0	6.00	7.58	0	0
604	6.00	7.48	0	0	6.00	8.00	0	0
704	6.00	7.52	0	0	6.00	8.00	0	0
804	6.00	7.56	0	0	6.00	8.00	0	0.04
904	6.00	7.59	0	0	6.00	8.00	0.06	0.21
1004	6.00	8.00	0.34	0.34	6.00	8.00	0.34	0.44
1104	6.00	8.00	0.38	0.38	6.00	8.00	0.37	0.51
1204	6.00	8.00	0.53	0.54	6.00	8.00	0.54	1.09
105	3.52	7.35	0	0	6.00	7.13	0	0
205	6.00	7.37	0	0	6.00	7.48	0	0
305	6.00	7.39	0	0	6.00	7.52	0	0
405	6.00	7.42	0	0	6.00	7.56	0	0
505	6.00	7.44	0	0	6.00	7.58	0	0
605	6.00	7.48	0	0	6.00	8.00	0	0.04
705	6.00	7.52	0	0	6.00	8.00	0	0.06
805	6.00	7.56	0.06	0.07	6.00	8.00	0.09	0.10
905	6.00	7.59	0.20	0.20	6.00	8.00	0.23	0.27
1005	6.00	8.00	0.38	0.38	6.00	8.00	0.40	0.40
1105	6.00	8.00	0.41	0.41	6.00	8.00	0.43	0.45
1205	6.00	8.00	1.07	1.07	6.00	8.00	1.09	1.17
106	6.00	7.38	0	0	6.00	6.42	0	0
206	6.00	7.39	0	0	6.00	7.46	0	0
306	6.00	7.41	0	0	6.00	7.52	0	0
406	6.00	7.44	0	0	6.00	7.56	0	0
506	6.00	7.46	0	0	6.00	7.58	0	0
606	6.00	7.49	0	0	6.00	8.00	0	0.03
706	6.00	7.52	0.09	0.09	6.00	8.00	0.10	0.10
806	6.00	7.56	0.14	0.14	6.00	8.00	0.15	0.15
906	6.00	7.59	0.24	0.24	6.00	8.00	0.29	0.28
1006	6.00	8.00	0.33	0.33	6.00	8.00	0.37	0.37
1106	6.00	8.00	0.35	0.35	6.00	8.00	0.39	0.39
1206	6.00	8.00	1.13	1.13	6.00	8.00	1.23	1.21
107	6.00	7.43	0	0.22	6.00	6.48	0.02	0.09
207	6.00	7.43	0	0.22	6.00	7.44	0.02	0.10
307	6.00	7.43	0	0.22	6.00	7.52	0.02	0.12
407	6.00	7.45	0	0.22	6.00	7.56	0.02	0.12
507	6.00	7.48	0	0.22	6.00	7.58	0.02	0.12
607	6.00	7.50	0	0.22	6.00	8.00	0.10	0.18
707	6.00	7.52	0.13	0.35	6.00	8.00	0.14	0.23
807	6.00	7.56	0.19	0.41	6.00	8.00	0.22	0.30
907	6.00	7.59	0.27	0.49	6.00	8.00	0.29	0.37
1007	6.00	8.00	0.27	0.49	6.00	8.00	0.29	0.38
1107	6.00	8.00	0.29	0.51	6.00	8.00	0.33	0.41
1207	6.00	8.00	1.07	2.06	6.00	8.00	1.12	1.42

108	6.00	7.47	0.11	0.55	6.00	6.23	0.10	0.30
208	6.00	7.47	0.11	0.55	6.00	7.47	0.11	0.36
308	6.00	7.47	0.11	0.55	6.00	7.52	0.11	0.36
408	6.00	7.47	0.11	0.55	6.00	7.56	0.11	0.36
508	6.00	7.49	0.11	0.55	6.00	7.58	0.11	0.36
608	6.00	7.52	0.11	0.55	6.00	8.00	0.11	0.36
708	6.00	7.54	0.13	0.57	6.00	8.00	0.15	0.40
808	6.00	7.56	0.18	1.02	6.00	8.00	0.22	0.47
908	6.00	7.59	0.22	1.06	6.00	8.00	0.24	0.50
1008	6.00	8.00	0.22	1.06	6.00	8.00	0.24	0.50
1108	6.00	8.00	0.22	1.06	6.00	8.00	0.27	0.54
1208	6.00	8.00	0.56	2.35	6.00	8.00	1.05	2.03